

심사보고서

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

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655
----------	-----

2017. 9. 11(월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7년 8월 21일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8월 24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9월 4일

-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)

가. 제안사유

- '99년 1월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체결 이후 5개 시·도가 매년 윤번제로 간사를 맡아 관광협력 사업계획을 수립 하고 공동 상품 개발·홍보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상호협력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
- 이에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의 지위 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행정협의회 구성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개요

- 구 성 :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, 강원도, 충청북도
- 목 적 : 관광상품 공동 개발·홍보를 통한 지역관광 진흥 도모
- 운 영 : 5개 시·도가 윤번제로 사업 주관
- 재 원 : 사업예산(각 시·도별 균등분담) 및 전년도 이월금

○ 주요사업

- 수도권 5개 시·도 연계 관광상품 및 홍보 콘텐츠 개발
- 지방자치단체별 각종 축제, 행사 참여 등 관광분야 교류
- 개발 관광상품의 국내·외 홍보 및 판촉활동
- 지방자치단체별 관광 현안사업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등

○ 협의회 지위 유지 필요성

- 수도권의 균형 있는 관광산업 발전 및 국제적 인지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공동 관광상품 개발과 꾸준한 홍보·마케팅이 필요하며
- 5개 시·도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·운영을 통해 공동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수도권 관광 진흥 협의회의 지위 유지가 요구됨

3. 검토보고 요지

○ 이번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은

- 1999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, 강원도, 충청북도 5개 시도가 모여 수도권 관광진흥 공동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를 설립하였음.
- 5개 시도가 매년 5천만원씩 부담하여 2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공동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-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는 그동안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로 보지 않아 규약안을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운영되고 있었음.

-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관광진흥협의회 운영비의 부담 근거와 지속적인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로 하고자 하는 것임.
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(경비지출의 제한)는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, 현재의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에 대한 운영경비 부담은 법령위반에 해당함.
- 따라서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로 변경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.
- 금번 규약안은 행정의 절차를 합법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」

의안번호	제 655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 회)

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7년 8월 21일

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

의안 번호	65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7년 8월 21일
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- ' 99년 1월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체결 이후 5개 시·도 가 매년 윤번제로 간사를 맡아 관광협력 사업계획을 수립 하고 공동 상품 개발·홍보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상호협력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
- 이에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의 지위 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행정협의회 구성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개요

- 구 성 :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, 강원도, 충청북도
- 목 적 : 관광상품 공동 개발·홍보를 통한 지역관광 진흥 도모
- 운 영 : 5개 시·도가 윤번제로 사업 주관
- 재 원 : 사업예산(각 시·도별 균등분담) 및 전년도 이월금

나. 주요사업

- 수도권 5개 시·도 연계 관광상품 및 홍보 콘텐츠 개발
- 지방자치단체별 각종 축제, 행사 참여 등 관광분야 교류
- 개발 관광상품의 국내·외 홍보 및 판촉활동
- 지방자치단체별 관광 현안사업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등

다. 협의회 지위 유지 필요성

- 수도권 균형 있는 관광산업 발전 및 국제적 인지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공동 관광상품 개발과 꾸준한 홍보·마케팅이 필요하며
- 5개 시·도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·운영을 통해 공동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수도권 관광진흥 협의회 지위 유지가 요구됨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수도권 관광진흥 협의회 운영 규약안

제1조(목적) 본 규약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, 외국인관광객 증가추세, 주5일제 근무 등 관광여건 변화에 따른 수도권 관광진흥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 관광진흥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본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
2. 인천광역시
3. 경기도
4. 강원도
5. 충청북도

제3조(사업 추진) 본 협의회는 사업은 5개시도가 윤번제로 사업을 추진한다.

제4조(처리사무) 본 협의회는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간의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협의 한다.

1. 관광상품의 지역 연계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
2. 지방자치단체별 각종 축제·행사 참여 등 교류활동 전개
3. 수도권 5개 시·도 관광상품의 국내·외 홍보를 위한 판촉활동에 대한 사항
4. 지방자치 단체별 관광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대한 사항
5. 그 밖에 협의회는 협의할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5조(조직) ①협의회는 회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.

②협의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관광담당국장, 인천광역시 관광담당국장, 경기도 관광담당국장, 강원도 관광담당국장 및 충청북도 관광담당국장으로 한다.

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괄 간사 1명을 둔다.

④ 간사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담당과장이 되며, 회의 운영의 기록관리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.

제6조(의장) ①본 협의회 회장은 서울특별시 관광담당국장, 인천광역시 관광담당국장, 경기도 관광담당국장, 강원도 관광담당국장 및 충청북도 관광담당국장 순의

윤번제로 한다.

②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.

③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④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인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개최)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연1회 매년 상반기중에 개최한다.

③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하며, 협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참석대상으로 한다.

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위원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하며, 회의 개최 후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⑤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회의 개최 결과를 관계 위원과 각 시장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협의결과 처리) 본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은 그에 따라 사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.

제9조(협의사항의 조정)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제10조(협의방법) ①위원은 협의안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개최를 요구한 위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.

② 협의안건 의결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하며, 위원의 위임을 받아 참석한 대리인에게 토의·표결 권한을 부여한다.

제11조(실무협의회)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
②실무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관광담당 과장과 안전관련 과장을 위원으로 하며,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③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안전 중 대수롭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실무협의회에

서 처리할 수 있다.

④회장이 속하였거나 회의를 소집한 위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업무담당 과장이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된다.

제12조(경비부담 및 집행)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“수도권 관광진흥 공동사업 ”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·도에서 부담할 수 있다.

② 수도권 관광진흥 협의회 경비 집행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.

제13조(사무인계인수) 회장은 임기만료 1개월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다음 회장에게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.

제14조(규약개정) 회원 전원이 필요로 하여 찬성하면 본 규약을 제정(개정) 할 수 있다.

제15조(보칙)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 (발체)

□ 지방자치법

제152조(행정협의회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153조(협의회의 조직)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.

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제154조(협의회의 규약)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협의회의 명칭
2.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
3.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
4.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
5.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
6.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155조(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)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

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, 의견 개진,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56조(협의사항의 조정)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(調整) 요청을 하면 시·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, 시·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·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관계되는 시·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.

제157조(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)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.

제158조(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)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